

전자저널의 효율적인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license contracting for e-journal

황 옥 경 (Ok-Gyung, Hwang)¹⁾, 이 두 영 (Too-Young, Lee)²⁾

초 록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 사서들은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전자저널 이용이 크게 제한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개발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외에서 제시된 라이선스 계약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을 제시하였다.

영 문 초 록

Along with the increased use of e-journal since mid of 1990's,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of license contracting in the library. However the librarians who have no enough knowledge nor technology to handle the licensing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he process. The study intended to help them understand the practical problems of license contracting between library and vendors, and proposed guidelines for developing model license for e-journal based on the licensing principles of IFLA and ALA.

키워드: 전자저널, 라이선스, 이용허락,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모델, 라이선스 계약 원칙, 저작권법, 계약법

1)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hmirim7@dreamwiz.com)

2)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leety@cau.ac.kr)

▪ 논문접수일 : 2004. 1. 20.

▪ 게재확정일 : 2004. 3. 13.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저작물을 구매하는 것과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것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 저작물의 물리적인 복제물을 구매하는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소비자에게 지적재산권이 양도되는 보편적인 모델로서, 복제물에 담겨 있는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전적으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저작권법은 '최초판매의 원칙' 혹은 '권리 소진의 원칙'에 따라 구매된 저작물에 담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자유롭게 대여하거나 재판매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정보의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라이선스 계약은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계약은 대개 계약법을 따르게 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인 쌍방이 합의한 조건 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라이선스 계약 조건 및 내용은 도서관이 어떤 조건을 어떤 내용으로 협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기존의 저작권법 하에서 누리려던 도서관 면책 사항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전자 저널과 같은 전자 자원은 인쇄 형태의 자원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과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도서관에서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 또는 대부분의 라이선스 계약이 특정 기간에 몰려 있다는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라이선스 계약 조건 및 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의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도서관 모체기관의 행정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도서관 사서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에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라이선스 계약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과 지침 및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도서관에서의 효율적인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인 라이선스 계약 조건 및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이론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전자저널의 유용성이 제한되는 라이선스 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둘째, 국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구조 및 유용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IFLA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과 ALA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침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체결하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사례들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2.

도서관에서의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의 문제점

2.1.

법제상의 라이선스 계약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 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라이선스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라이선스에 대한 정의나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 법제에서도 라이선스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민법의 전형계약에도 라이선스라는 용어나 계약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도 라이선스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라이선스에 상응하는 법률개념으로 특허법에서는 ‘實施’,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사용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제적으로는 이용허락이나 사용허락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저작물, 특허 발명 기타 지적소유권의 대상을 제3자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 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라이선스라고 한다.

라이선스란 특히 무체재산권의 소유자가 그 권리자에게 유보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 시키면서 단지 저작물의 이용권만을 허락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허락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승낙의 표시이며 이용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 기간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외의 경우에는 법제적으로 미국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에 라이선스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UCITA의 제 102조 41호에서는 “정보 또는 정보재산권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 배포, 실연, 개작 또는 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권한이 부여된 접속 또는 이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계약으로, 정보에 대한 전권은 부여하지는 않는 계약”이라고 라

이선스를 정의 내리고 있다. 이 정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동법에서 제시하는 관련 개념에 대한 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란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소리, 마스크워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하며 이들의 수집 및 집적을 포함한다.

둘째, “컴퓨터정보”란 컴퓨터로부터 또는 컴퓨터의 사용을 통해 얻거나 혹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의미한다.

셋째, “정보재산권”이란 특허권, 저작권, 마스크워크, 영업비밀, 상표권, 출판권을 다루는 법이나 정보권리자의 이익에 기초하여 타인에 의한 정보 이용이나 접근을 통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과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기타의 법에 의해 제작된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넷째, “컴퓨터 정보거래”란 컴퓨터 정보 또는 컴퓨터 정보에 대한 정보재산권을 생성, 수정, 양도 또는 라이선스 하는 계약 또는 그 이행을 의미한다.

다섯째, “라이선시(licensee)”라 함은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의해 컴퓨터정보를 득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 혹은 기관을 의미한다.

여섯째, “라이선서(licensor)”라 함은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의해 컴퓨터정보나 이에 대한 정보재산권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러한 컴퓨터정보나 정보재산권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러한 컴퓨터정보나 정보재산권에의 접근 또는 이용을 허락할 의무를 지는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접속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콘텐츠 소유자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정보콘텐츠 소유자가 라이선서이다. 정보 또는 정보재산권의 교환에 있어서는 각 당사자가 당해 정보나 정보재산권 또는 허락된 접근의 라이선서이다.

UCITA에서는 계약이라 함은 동 법 및 기타 현행법에 따라 이루어진 당사자의 합의로부터 발생한 총체적인 법적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의 제202조 내지 제206에서 명시하는 계약의 성립 조건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청약과 승낙,

둘째는 당사자의 사실 행위,

셋째는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자대리인의 행위,

넷째는 그 외 합의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모든 방법이다.

전자 저널 이용을 위한 계약은 대개의 경우 출판사가 청약을 하고 도서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일단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면 동법 제208조 내지 제211조를 적용하여 동 계약의 계약조건, 즉 계약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당해 기록에 동의하는 때, 그 기록에 담긴 계약 조건이 당해 계약의 계약 조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세 당사자들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UCITA 제613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첫째는 중간상인으로서, 최종이용자에게 판매 또는 라이선스할 목적으로 라이선서

로부터 정보를 수령하는 상업적인 라이선시이다. 흔히 에이전트 혹은 벤더라 불린다.

둘째는 출판인으로서, 중간상인에 의해 최종이용자에게 배포되는 정보를 거래 객체로 하는 라이선스를 최종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중간상인이 아닌 라이선시이다.

셋째는 최종이용자로서,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라이선시 자신이 이용할 목적으로 중간상인으로부터 유형의 매체를 통한 인도로써 정보를 취득하는 라이선시이다.

도서관은 엄밀히 말하자면 최종이용자가 아니지만 최종이용자를 위해 봉사하는 라이선시이다. 대부분의 라이선스 상에서는 도서관이 라이선시,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라이선스인 경우에는 회원으로 명시되며, 실제적인 최종이용자는 이용자로 명시되면서 인증된 이용자 및 비인증이용자로 나뉘어 명시된다.

2.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이용의 제한

Library Journal(2001)이 대학 도서관에서의 전자 저널 시장과 관련하여 실시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에는 전체 예산 중 43%가 인쇄물 형태의 저널에 소요되었고, 11%가 전자저널에 소요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전체 예산 중 인쇄물 형태의 저널에 소요된 비율은 39%로 줄어든 반면 전자저널에 대한 예산 비율은 16%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이르면 인쇄물 형태의 저널 비율이 35%, 전자저널의 비율이 22%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 현상은 국내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도서관 중 국내외 인쇄저널이나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77개교의 대학도서관을 조사대상으로 설문 실시한 결과, 1997년에 1개관(2.6%)이 구독을 시작한 이래,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0개관(26.3%), 2000년에 14개관(36.8%),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2개관(5.3%)의 비율로 전자 저널이용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자저널 이용 대학도서관의 비율은 약 76.3%로 나타났다.(황신혜, 이란주, 2003)

이렇게 전자 저널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인쇄 형태의 저널에 비해 전자저널이 지니고 있는 유용성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유용성이란 일반적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기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정도, 혹은 이용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쇄 형태 자료의 경우이든 디지털 형태 자료의 경우이든 자료의 유용성이라 함은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료의 유용성이라 하면 자료 이용 환경의 용이함에 따른 유용성 측면과 자료의 콘텐츠에 중점을 둔 이용가치 측면의 유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인쇄 형태 자료와 디지털 형태 자료간의 구분은 동일한 콘텐츠에 대한 형태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두 형태 간의 유용성 비교는 결국 자료 이용 환경의 용이함에 대한 비교를 의미한다.

인쇄 형태의 자료와 대비하여 디지털 자료의 유용성이 더욱 클 것이라는 기대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자료의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가능하다.

둘째,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어떤 질적 저하도 없이 신속하게 복제가 이루어진다.

넷째, 인쇄 형태의 자료인 경우에는 서가 공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는 서버 용량만이 문제가 될 뿐 자료 비치를 위한 공간 문제는 사라진다.

전자저널 역시 디지털 형태의 자료로서 상기의 장점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러한 장점들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약 사항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간적인 제약

디지털 자료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보면 이용자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이용자에 대한 제한은 IP 인증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특정 구내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동시 접속자수 제한

대부분의 라이선스 계약상에서는 동시 접속자수 제한이라는 계약 조건을 통해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 제28조 1항 1호에 따르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도서관은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를 1인1부에 한하여 그리고 관내 전송에 한해 “보관된 도서 등”만을 이용해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동시 접속자의 허용 숫자를 높일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라이선스 대금도 함께 높아지므로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동시 접속자 수를 낮추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된다.

3) 복제에 대한 제한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대개의 경우 복제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다. 특히 도서관 상호 대차의 경우에 이러한 복제에 대한 제한은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28조 1항 3호에 따라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도서관간의 열람 목적의 전송 및 디지털 도서 등의 출력 등에 대해서는 2003년 7월의 개정 저작권법

에 따라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 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도서관 보상금 분배 지정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도서관상호대차나 원문복사서비스는 학술 커뮤니티 내에서는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온 개념이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법적으로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현행 라이선스 계약 내용 중에는 전자저널의 도서관상호대차를 허용하되 Ariel과 같은 보안 전송을 통해 파일이 타 도서관에 전송되면 출력 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타 도서관에 파일을 전송하는 대신에 기사를 출력하여 수신 도서관에 인쇄 형태로 전달하는 형태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 자료인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의해 이러한 디지털 복제를 제한하고 때로는 인쇄 형태로 출력해서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4) 자료 보존과 관련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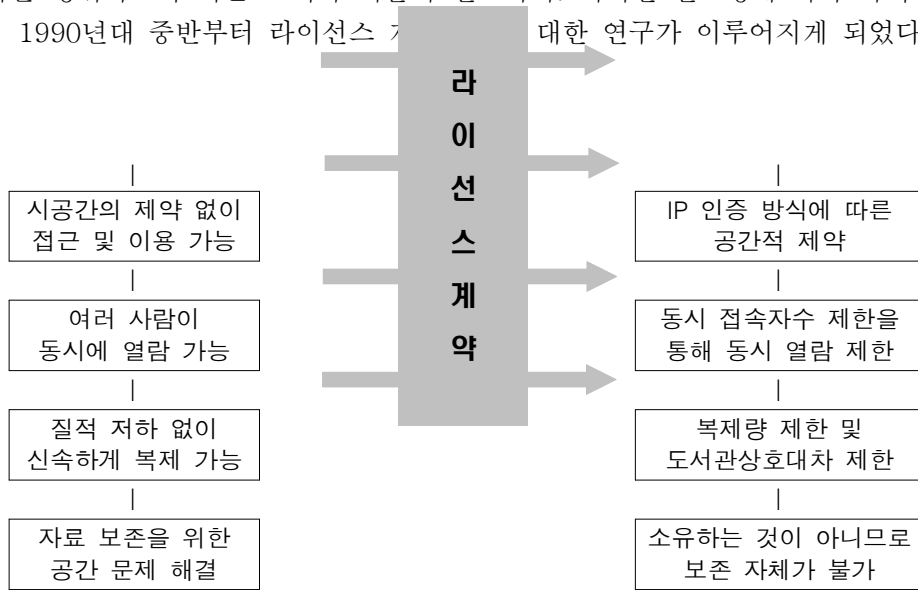
전자저널의 경우에는 보존해야 할 자료를 도서관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 기간 동안 특정이용 조건 하에서만 해당 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계약 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도서관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국내 저작권법 제28조 1항 1호에 따르면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전자저널과 같이 도서관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저널의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때로는 계약 종료와 더불어 출판사가 해당 라이선스 자료를 CD-ROM 등의 매체에 저장시킨 상태로 다시 도서관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원시 데이터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색인작성을 하여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작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계약 종료가 되어도 도서관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지속적인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도서관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에 의존하는 상태로서 출판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바람직한 보존 방법이 될 수 없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전자저널의 유용성 제한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저널은 디지털 자료로서의 장점들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장점은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한적으로 축소되거나 사라져버리게 된다. 전자저널이 디지털 자료로서의 장점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의 협상 과정에서 도서관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3.

(그림 1)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전자저널의 유용성 제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필요성

Cox(2001)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모델이란 "법적인 복잡함을 최소화시키는 도구"이다. Croft(2001)는 라이선스 모델이란 이상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것으로서, 사서와 벤더 양쪽 모두에게 공정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계약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전자정보자원 제공자들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라이선스를 채택하게 되면서부터 전통적인 인쇄 저작물의 구매와 동시에 소유하던 패러다임이 라이선스를 통한 접근 및 이용의 패러다임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서들은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라이선서인 출판사측으로부터 제시되는 라이선스는 이들 라이선스는 출판사측의 전문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것임에 반해 라이선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서들은 이러한 법률적 지식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사서들은 협상 및 계약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은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인쇄 형태 자료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 형태 자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서관이 누려오던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 도서관상호대차, 아카이브 등을 위한 모든 저작권 제한은 이제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복잡한 과정으로서 대부분의 사서들은 이러한 협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많은 도서관들이 라이선스 체결을 하지만 어떤 라이선스를 어떤 조건으로 체결했는지에 대한 사례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이유는 1) 이미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원래 해당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라는 것, 2) 도서관 분야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은 비교적 초기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을 통해, 혹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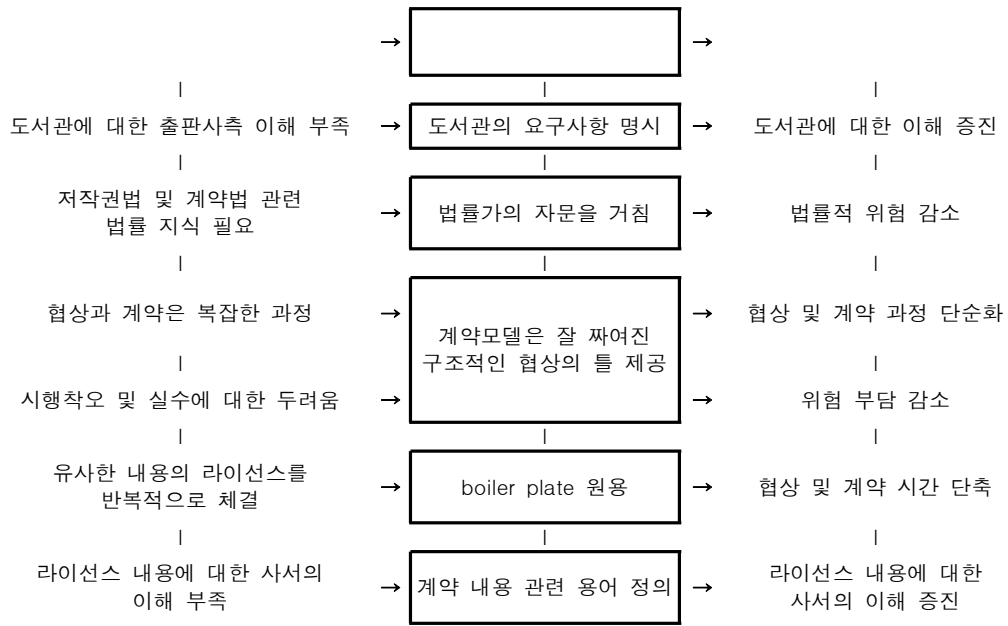
물론 이러한 계약의 다양함이나 복잡함이 도서관측에만 부담 되는 것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쌍방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Cox(2000)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계약 과정을 합리화하고 유사한 조항들, 소위 ‘boilerplate clauses’(상투적인 문구의 조항들)로 이루어진 여러 라이선스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절실했다”고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도서관 사서들이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참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통해 사서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의한 업무의 효율성을 지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라이선스 계약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놓인 쌍방간의 합의인바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라이선스 계약모델은 라이선서인 출판사 혹은 대행사에 게 도서관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자저널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계약모델은 건별로 서로 다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률상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모델이라고 하는 검증받은 어떤 구조적인 틀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따라 하나하나 차례로 협상을 진행해 간다면 복잡한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 체결 과정도 단순화될 수 있으며, 협상 과정 및 계약서상에 중요한 조항을 빠트림으로 해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모델은 협상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한다.

라이선스 계약모델에는 협상 과정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개념에 대한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어 법률적인 기초지식이 부족한 사서들에게 라이선스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림 2) 라이선스 계약모델 이용에 따른 계약 업무의 효율성 향상

3.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을 위한 지침 설정

본 장에서는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와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같은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 원칙들을 분석하여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도출해 내고자 한다.

3.1.

ALA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 원칙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제시한 "전자자원의 라이선스 계약원칙(Principles for Licensing Electronic Resources)"은 다음의 <표 1>과 같다(ALA, 1997).

<표 1> ALA의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시가 계약을 통해 획득하게 될 접근권의 내용 즉, 콘텐츠에 대한 영구 이용권인지 혹은 규정된 기간 동안만을 위한 접근권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2.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법 하에 허용된 라이선시의 권리 혹은 그 이용자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시와 라이선서 쌍방의 지적재산권을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라이선시가 금지된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그 이용자 집단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 주었다면, 이용자에 의해 라이선스 자원의 이용이 인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 라이선시가 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5.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자원으로의 접근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6.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시가 부당한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접근 강화의 의무를 공정하게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강화가 인증된 이용자의 사생활과 기밀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라이선시는 인증된 이용자가 라이선스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계약 위반으로 보이는 이용이 있는 경우 행해야 할 절차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8.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서가 알게 된 어떠한 라이선스 위반에 대해 라이선시에게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적절하다면 라이선시가 조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9. 라이선스 계약은 인증된 이용자에 의한 접근에 장애가 되는 인증 시스템의 이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0. 자원의 영구 이용이 허락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시가 보존 및(혹은) 이용 가능한 아카이브 복제의 생성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이 라이선시로 하여금 이용가능한 보존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은 누가 자원에 대한 영구적인 아카이브 책임을 지니며, 어떤 조건 하에서 라이선시가 이용자를 아카이브 복제물에 접근시키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1. 라이선스 조건은 계약서 상에 쌍방이 기명 날인 하는 시점에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예를 들어 접근 방식이나 범위 등) 이러한 변경이 시행되기 이전에 라이선시 혹은 라이선서가 상대방에게 적시에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변경에 대해 통지를 해야 하며, 그러한 변경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에 의한 것이든 계약 해지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12.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에 따른 자원 이용이 제 3자의 여하한 특허, 저작권, 의장, 혹은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한 여하한 소송으로부터도 라이선시가 해를 입지 않도록 라이선서가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13. 어느 일방에 의한 이용 데이터의 일상적인 수집 활동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이들 활동은 기밀보호 및 사생활보호와 관련한 기관의 정책과 법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14. 라이선스 계약은 현행 라이선스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라이선시에 의해 합의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라이선서와 제 3자간의 별도의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 대해 라이선시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15. 라이선스 계약은 쌍방에 적절한 해지권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

1997년에 공개된 이 원칙은 일종의 평가용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인쇄물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소유가 라이선스를 통한 접근으로 대체되어 가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사서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이 되었다. 미국도서관협회(ALA) 외에도 미국법률도서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학술보건과학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Academic Health Sciences Libraries),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그리고 전문도서관협회(Special Libraries Association)의 6개 기관이 라이선스 계약 원칙 개발에 참여하였다. 궁극적으로 ALA 원칙은 사서에게 전자 자원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의 협상 지침을 제공하고, 그런 협상 과정에서 전자정보자원제공자들이 도서관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3.2.

IFLA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

국제도서관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이 2001년에 제시한 "라이선스 계약원칙(Licensing Principles)"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IFLA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

<p>라이선스와 법 원칙 1. 라이선스는 도서관과 출판사 혹은 벤</p>	<p>라인 강의 지원 활동에 나타나는 강의 관련 정보로의 링크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복제를 허용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수 및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p> <p>원칙 32. 라이선서는 이용자의 물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해당 도서관 혹은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등록 관계를 확인하여 이들이 라이선스 되어 있는 전자 정보 자원에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p>
---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FLA 라이선스 계약 원칙은 크게 8개 부문에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IFLA가 특히 관심을 두는 부분과 같다.

첫째, 현재 전자 정보의 이용은 라이선스라고 하는 계약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라이선스 계약은 정보 사슬에 얽혀있는 대부분의 당사자들에게 있어 비교적

더 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내용과 조건은 계약 체결 이전에 라이선시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하며 쌍방 간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과 조건을 결정해야 된다.

원칙 2. "shrink-wrapped" 및 "click-through"와 같은 비협상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저작권, 사생활보호, 지적 자유 및 소비자권리와 같은 분야에서의 공공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원칙 3.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어지는 권리를 배제하거나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원칙 4. 준거법의 선정은 쌍방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칙 5. 라이선스는 도서관 고객의 일차 언어로 협상되고 쓰여야 한다.

라이선스와 가치

원칙 6. 라이선스 합의 사항은 관계 당사자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여 명백하고 망라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원칙 7. 라이선스는 쌍방의 권리와 책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원칙 8. 라이선스는 해제나 소송 이전에 구제 기간 및 여타 해결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원칙 9. 계약 당사자들은 합당하고 규정된 상황 하에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라이선스: 접근과 이용

원칙 10. 라이선스는 라이선시에 등록하고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원칙 11. 라이선스는 라이선시의 도서관 구내에 있는 개별 미등록 이용자에게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원칙 12. 라이선스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트인 경우에도 라이선시 조직의 일부인 경우에는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원칙 13. 원격 접근은 웹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원칙 14. 자관으로 다운로드된 데이터는 여러 표준 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주요컴퓨팅 플랫폼과 네트워크 환경에서이식 가능해야 한다.

원칙 15. 라이선스는 이용자들이 최소한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료를 읽고, 다운로드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칙 16. 원격접근을 통해 제공자의 사이트로 제공된 자원은 24시간 기준으로 이용 가능 해야 한다.

원칙 17. 콘텐츠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콘텐츠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 이용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라이선스와 최종이용자

원칙 18. 도서관은 전자 자원에 대한 합당한 이용과 관련한 교육을 이용자에게 실시

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취하는 동시에 제공업자와 더불어 그러한 불법 이용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침해를 중지하기 위한 방도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개별 이용자들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원칙 19. 개인이나 도서관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합의하였거나 합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동의하도록 "클릭" 계약과 같은 계약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원칙 20. 이용자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원칙 21. 네트워크 정보 제공업자는 도서관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이다.

둘째, 라이선스 계약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구매하려는 자가 함께 자원별로, 그리고 거래별로 합의를 하는 비즈니스 방식이다.

셋째, 이용권은 라이선스 조건 및 내용에 의해 규정된다. 전자 자원에 대한 이용권은 전통적인 인쇄 형태의 정보 이용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넷째, 도서관은 도서관이 통제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대행사 사이트나 출판사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접근을 제공하게 된다. 전자 자원의 장기 보존 및 아카이빙 방법 혹은 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3.3.

두 원칙의 비교 분석

ALA 원칙은 1997년, IFLA 원칙은 2001에 제정되었다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이 두 원칙의 내용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ALA 원칙은 “접근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지 도서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념해야 할 소극적인 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IFLA 원칙은 “쌍방간의 권리 및 책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도서관에서의 이용권 및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두 원칙간의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른 차이점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대적 상황 변화로 인해 ALA 원칙에서는 다루어진 바 없으나 IFLA 원칙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IFLA 원칙의 [원칙 2]에 있는 “shrink-wrapped” 혹은 “click through” 라이선스에 대한 원칙과 [원칙 19]에 있는 “click” 계약에 대한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IFLA [원칙 31]과 [원칙 32]에서 교수 및 학습을 위한 강의용 편집 교재와 관련한 원칙으로 온라인 강의를 고려한 관련 정보로의 링크나 복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2)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면 이용자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ALA 원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5조에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자료로의 접근 조건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접근 및 이용 조건에 대해서는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IFLA 원칙에서는 “라이선스: 접근과 이용”이라는 제하에 [원칙 10]부터 [원칙 12]까지 이용자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칙 13]부터 [원칙 17]까지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가격책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ALA 원칙에서는 이에 대한 원칙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IFLA 원칙에서는 “라이선스와 가격책정”이라는 제하의 [원칙 24]부터 [원칙 28]까지가 관련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다.

4)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중의 하나가 도서관상호대차 관련 조항이다. ALA 원칙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나 IFLA 원칙에서는 “도서관상호대차”라는 제하에 [원칙 29]와 [원칙 30]에서 이에 대한 원칙을 다루고 있다.

3.4.

종합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

ALA 원칙과 IFLA 원칙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약 조건과 지침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단, 몇 가지 조항이 추가가 된 바, 이러한 추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 3>의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 이 부족한 사서들이 라이선스 계약 내용과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가된 조항이다. 실제로 예일 대학도서관이 개발한 LIBLICENSE라든가, 대형 벤더들이 개발한 COX 라이선스, 캐나다 대학 컨소시엄인 CNSLP/PCLSN 라이선스, JSTOR 라이선스, JISC의 NESLi2 라이선스 등 대표적인 국외 라이선스 계약모델들은 모두 용어 정의 부분을 담고 있다.

둘째, 제3조 제7항의 이용자의 범위 및 제8항의 이용의 범위, 제4조 도서관상호대차의 제9항에 제시된 도서관상호대차 방식, 제5조 영구접근 및 아카이브의 제11항에 제시된 아카이브 방식들은 앞서 언급한 국외 라이선스 계약모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셋째, 제4조 도서관 상호대차의 제9항의 경우, 디지털 파일 형태로 타도서관에 전송하는 방식도 허용한다는 조항을 협상 가능 조항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 사서들 중 상당수는 전자저널의 경우 도서관상호대차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저작권법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실제로 체결되고 있는 라이선스를 보면 전자저널의 도서관상호대차를 제한적이거나 허락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또한 국내 저작권법상에서는 도서관간의 열람 목적의 전송 및 디지털 도서 등의 출력 등에 대해서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은 전자저널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기저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의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로 도서관상호대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유도하는 것은 도서관의 협상 기술과 노력에 달려 있다.

넷째, 제8조 분쟁 발생 및 해결의 제16항에 제시된 “라이선스 자료의 납기일 지연, 서비스 불이행 시간 발생 ... 등”과 관련한 내용은 라이선스인 도서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는 판단 하에 추가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한 조항 역시 국외 대부분의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다.

<표 3>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

<p>1] 일반원칙</p> <p>1) 도서관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즉 교육, 연구, 정보 접근과 관련된 공공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p> <p>2) 도서관은 현재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이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출판사와의 상호 이해 및 협력을 통해 전자출판의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한다.</p> <p>3) 도서관과 출판사간의 협력은 근본적으로 최선의 학술 정보 배포에 목표를 두고 있어야 한다.</p> <p>2] 용어의 정의</p> <p>4) 계약상의 조항에 명시된 용어 하나 문구 하나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한다.</p> <p>3] 이용자 및 이용의 범위</p> <p>5) 라이선스 내용 및 조건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라이선시의 권리 혹은 그 이용자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p> <p>6) 라이선스 내용 및 조건은 근본적으로 이용자들이 라이선스 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p> <p>7) 이용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고려되어야 할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A. 교내에 있는 등록된 이용자</p>	<p>B. 교외에 있는 등록된 이용자</p> <p>C. 도서관내에 있는 미등록 이용자(방문 이용자)</p> <p>8) 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검색, 열람, 디스플레이, 다운로드, 출력, 전송 등의 이용방식에 대한 허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p> <p>4] 도서관상호대차</p> <p>9) 도서관상호대차 혹은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허락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선택 가능한 도서관 상호대차 방식은 다음과 같다.</p> <p>A. 인쇄물 형태로 출력하여 타도서관에 서비스한다.</p> <p>B. 타도서관에 보안 전송 후 출력 완료와 더불어 파일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서비스한다.</p> <p>C. 디지털 파일 형태로 타도서관에 전송하는 방식도 허용한다.</p> <p>5] 영구 접근 및 아카이브</p> <p>10)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영구 접근을 허락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p> <p>11) 영구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누가 영구적인 아카이브에 대한 책임을 지며 라이선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이용자들을 아카이브 자료에 접근시키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선택 가능한 아카이브 방식은 다음과 같다.</p> <p>A. 라이선시가 백업 복제본 형태로 보존한다.</p> <p>B. 라이선서가 직접, 혹은 라이선서가 지정하는 제 3자가 디지털 형태로 아카이브 한다.</p> <p>C. 라이선시가 직접 디지털 형태로 아카이브 한다.</p> <p>D. 국가적인 차원의 제 3의 기관이 중앙집중 방식의 아카이브를 하도록 한다.</p> <p>6] 강의용 편집 교재</p> <p>12) 교수 및 학습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강의용 편집</p>
---	--

교재의 용도로 라이선스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㉚ 라이선시의 면책

13) 라이선시가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준수의 중요성과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인증되는 이용 및 금지되는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려주었다면 인증된 이용자가 인증되지 않은 이용을 행한 경우, 라이선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4) 라이선스 자료의 이용이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라이선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㉛ 분쟁 발생 및 해결

15) 어느 일방이 라이선스 계약 내용 및 조건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미리 이에 대해 통지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느 일방에 의한 것이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6) 라이선스 자료의 납기일 지연, 서비스 불이행 시간 발생, 라이선스 자료의 변경 등의 경우와 관련하여, 라이선서가 보증하는 범위 및 라이선서의 보상 방식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7) 해제나 소송 이전의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8)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㉜ 이용 데이터

19)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이용자 이용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용자 이용 데이터를 제공 받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0) 이용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는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지침에 의한 국내 전자저널 라이선스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체결하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사례를 관련 조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은 5개 라이선스이다.

- Consortium License Agreement (KESLI CONSORTIUM-KLUWER ONLINE)
- ISI agreement
- Nature Online Academic License Agreement
- Project Muse Subscription Agreement
- ScienceDirect License Agreement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원칙

본 연구의 개발지침에서 제시한 일반 원칙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 이용의 확산을 위한 저작권법 준수를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Licensing Information Platform(1998)에서는 계약서상에 “본 라이선스는 적용 가능한 국가 저작권법 하에서 도서관 및 그 이용자에게 허용된 여하한 법적 권리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권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적어도 국가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된 공정 이용과 같은 법적 권리가 라이선스에 의해 무시되는 일은 없도록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현행 라이선스의 경우 저작권법 하에서의 권리나 공정 이용을 명시하는 라이선스는 그 비율이 극히 낮다.

공정이용이나 도서관 상호대차, 아카이브,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저작권에 관한 법리가 법이론적으로는 이미 확립 되어 있다고는 하나, 디지털 정보거래에 있어 논의의 핵심은 저작권 거래를 통해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그러한 저작권법상의 법리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 중의 하나는 라이선스 상의 여하한 조항도 현재 저작권법 하에서 분명하게 허용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못함을 명백하게 밝히는 문구를 라이선스 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국내 현행 라이선스의 경우,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라이선스보다 용어 정의가 없

는 라이선스의 비율이 더 높다. 용어 정의 부분은 단어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계약서에 나타나는 용어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법적 문건은 정확한 단어 사용을 요하기 때문에, 개념이 복잡하다거나 짧은 문구를 설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개념인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단어를 선정하여 명시하게 된다. 정의를 위한 의미 규정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계약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의 부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이용자 및 이용의 범위

국내 현행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국내 라이선스들이 인증된 이용자에 방문 이용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방문이용자란 라이선시에 등록을 한 이용자는 아니지만 현재 라이선시의 도서관을 방문 중인 이용자를 의미한다. 국내 현행 라이선스상의 방문이용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라이선시의 허락을 얻어 라이선시의 도서관 내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학술적,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 공중의 라이선스 자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라이선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 “대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정부기관 도서관의 경우에는 구독 기관의 도서관에 위치한 단말기를 통해 구독 기관의 허락을 득한 일반 공중도 라이선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라이선스도 있다

한편 허락되는 이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라이선스에서 인증된 이용자가 학술적, 교육적,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열람하고 디스플레이하고 다운로드 하고 출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된 이용자에 의해 다른 인증된 이용자에게 인쇄 형태나 전자적인 형태로 라이선스 자료의 개별 기사나 아이템의 복제본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라이선스는 거의 없다.

이용자 및 이용의 범위는 라이선스 계약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정 이용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도서관상호대차

현행 국내 라이선스 사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라이선스에서 "비상업적인 학술적 목적을 위한 경우, 요청에 따라 저널 기사를 출력한 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요청 도서관에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인 송신은 금하고 있다.

도서관상호대차가 가능하다는 하지만 이러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도서관이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명시해두는 라이선스도 있다. 이 경우 "홍보" 행위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 있지 않은 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도서관에서의 대이용자 봉사 기능을 매우 소극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조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좀 더 명확한 용어 정의와 더불어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정은 도서관상호대차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

다

5) 영구 접근 및 아카이브

국내의 경우, 도서관이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상에서 아카이브 및 백업 파일과 관련한 라이선스 내용은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조항이 전혀 없는 라이선스가 있는 반면에 아카이브 정책만을 별도의 문서로 계약에 첨부하는 라이선스도 있다.

별도의 문서로 아카이브 정책을 명시하는 라이선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라이선서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유지하도록 하겠지만 해당 저널의 출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거나 저널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혹은 특정 저널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보관소로 이전한다"는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은 지속적인 구독을 가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구독을 정지하게 되는 경우, 라이선스의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지금까지 구독을 해오던 라이선스 자료의 전자 복제본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복제본은 온라인 버전이 아니라 어떤 링크도 되어 있지 않은 채 구독 당시의 포맷으로 제공이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카이브 자료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이들 자료를 조직하여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구독을 중지하게 되면 아카이브도 중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상황이 된다. 반면에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사 측이 요구하는 가격 상승이나 여하한 불합리한 계약 조건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라이선스에서 백업이나 아카이브를 목적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한 부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조항은 두고 있다. 하지만 출력물 형태의 보관은 현재 국내 도서관 어디에서도 바라고 있지 않은 형태의 아카이브이다. 디지털 자료는 저장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점이 특히 도서관에 있어서는 큰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디지털 자료를 출력하여 보관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계약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몇 년간의 자료를 볼 수 있는 방식, 그 보다 더 이전의 자료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별도의 대금 지불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라이선스도 있다. 또한 기간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백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도 있다.

IFLA가 밝힌 바와 같이 전자 자원의 장기 보존 및 아카이빙 방법 혹은 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어떤 내용으로 아카이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좀 더 나은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갈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서관에서의 아카이브 기능은 사라질 지도 모른다. 도서관이 직접 디지털 형태로 아카이브를 유지하거나 국가가 지원하는 제 3의 기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카이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라이선서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영구 라이선스를 보장해주는 조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강의용 편집 교재

국내 현행 라이선스의 경우 강의용 편집교재와 관련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도 있으나 그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강의용 편집교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매 학기 종료와 더불어 반드시 강의용 편집교재를 삭제하고 라이선서의 요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라이선서에게 확인"해주도록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라이선서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청해야 하며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향후 사이버 강의 혹은 원격 강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인증된 이용자의 교내외 이용을 허락하는 이러한 사이버 강의 혹은 원격 강의에 대한 이용 허락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라이선시의 면책

국내 현행 라이선스에서는 인증된 이용자의 불법 이용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조항을 대부분 두고 있으나 비인증이용의 경우 라이선시가 이행해야 할 의무만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면책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은 라이선스도 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한 출판사의 보증 조항 및 제 3자로부터 저작권 관련 청구에 대해 도서관을 면책하는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은 라이선스도 있다.

저작권법 준수의 중요성 및 부정 이용에 대해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인증된 이용자의 부정 이용에 대해 도서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8) 분쟁 발생 및 해결

국내 현행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선스 계약이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간의 법적 의무와 이러한 의무를 파기한 경우에 구제를 모색하는 권리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법적 계약임을 염두에 둔다면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명시될 필요가 있는 조항일 것이다. 따라서 국내 현행 라이선스는 출판사 혹은 대행사와의 협상을 통해 이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지 관련 조항은 국내 대부분의 라이선스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이 조기 해지된 경우, 아직 남아 있는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기지불 금액의 반환에 대한 조항은 두지 않는 라이선스들도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 명시와 더불어 해지에 따른 기지불 금액 반환에 대한 조항의 명시 역시 필요할 것이다.

9) 이용 데이터

모든 라이선스에서 이용 데이터는 적용 가능한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그리고 쌍방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며, 개별 이용자의 익명성 및 이들의 탐색과 관련한 기밀은 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된 이용자에게만 패스워드 및 여타 접근 정보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조항들은 대부분 명시되어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전자저널 이용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자저널은 디지털 자료로서 1)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고, 2)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열람 가능하며, 3) 질적 저하 없이 신속하게 복제가 가능하고, 4) 자료 보존을 위한 공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디지털 자료의 장점들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자저널의 이용을 위해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1) IP 인증 방식에 따라 공간적이 제약을 받게 되고, 2) 동시접속자수의 제한을 통해 동시 열람이 제한되며, 3) 복제량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도서관 상호대차가 제한되고, 4)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하에서 이용만 하는 것이므로 보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유용성의 제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ALA 및 IFLA의 계약원칙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을 제안하였다. 개발 지침은 1) 일반 원칙, 2) 용어의 정의, 3) 이용자 및 이용의 범위, 4) 도서관상호대차, 5) 영구 접근 및 아카이브, 6) 강의용 편집 교재, 7) 라이선시의 면책, 8) 분쟁 발생 및 해결, 9) 이용 데이터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이 체결하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사례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행 국내 라이선스 내용 및 조건은 이러한 지침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비하여 도서관은 조속히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저작권법 및 계약법, 라이선스 협상의 기술 등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축조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황신혜, 이란주. "전자저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

- 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vol. 20, no. 2. 2003.
- ALA. "Principles for Licensing Electronic Resources". Final Draft, 1997.
<<http://www.arl.org/scomm/licensing/principles.html>> (06/03/2003)
- Albanese, Andrew Richard. "Library Journal Survey: Academic Libraries: 2001: Moving from Books to Bytes," *Library Journal*, 09/01/2001, p. 52-54.
CNSLP 라이선스.
<www.cnslp.ca/pr/achievements/CNSLP-License-12Feb01.doc>(06/03/2003).
- Cox의 Model Standard License. <<http://www.licensingmodels.com>>(06/03/2003).
- Croft, Janet Brennan. "Model licenses and interlibrary loan/document delivery from electronic resources,"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vol. 29, no. 4, 2001. pp. 165-168.
- Guenther, Kim. "Building Digital Libraries: Making Smart Licensing Decisions," *Computers Libraries*, vol. 20, no. 6, 2000.
<<http://www.infotoday.com/cilmag/jun00/guenther.htm>>
(06/03/2003).
- Harris, Lesley Ellen. "Getting What You Bargained For."
<<http://copyrightlaws.com/articles/arlicens.html>>(02/07/003).
- IFLANET. "Licensing Principles (2001)"<<http://www.ifla.org/V/ebpb/copy.htm>>(05/03/2003)
- John Cox. "Model generic licenses: co-operation and competition", *Serials Review*, vol. 26, no. 1, 2000. pp. 3-9.
JSTOR 홈페이지.
<<http://www.jstor.org/>>.
- Klugkist, Alex C. "LIBER Licensing Principles for Electronic Information," *LIBER QUARTERLY*, no.9, 1999. pp. 388-396.
LIBLICENSE Standard License Agreement.
<<http://www.library.yale.edu/~llicense/standlicagree.html>>
(06/03/2003).
- NESLi2 Licence for Journals.
<http://www.NESLi2.ac.uk/NESLi2_lic_010903.htm>(09/27/2003).
- Turner, Rollo. "Agents, Intermediaries, and Journal Licensing."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 90, no. 1, 2000. pp. 101-104.